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홍성룡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95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 홍성룡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대, 김인제, 김제리,
김태수, 문장길,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양민규, 이영실, 이정인,
이준형, 장상기, 전병주,
정진술, 최 선, 최웅식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에서 제도·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 인구영향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구영향평가 시행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와 실시내용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 나. 인구영향평가의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다.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과 결과 공개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 구조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구 구조에 미칠 영향과 효과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영향평가의 지표를 개발하며, 이에 필요한 실시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영향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정책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

에 따른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저출산
· 고령사회 시행계획

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
계획

4.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정책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세우고 공
표할 수 있다.

③ 인구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 및 사회·경제 현황 등 정책 환경

2. 인구정책이 인구의 증감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④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
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범적용) 시장은 인구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
영향평가를 시범적용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인구영향평가의 절차) ① 인구정책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업
부서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을 계획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인구영향자체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인구영향평가 담당 부서의 장
(이하 “평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평가부서장은 평가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그 사업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평가부서장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인구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구영향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부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평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인구정책의 개선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추진 실적과 인구정책의 개선 실적을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구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시장은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사항
2. 공개로 인하여 특정인이나 특정기관 또는 단체에 예측하지 못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사항
3.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제9조(인구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종사자에게 인구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100800000018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홍성룡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공도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10.08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 조례안은 제4조(인구영향평가 실시), 제5조(시범적용), 제9조(인구영향평가 교육) 규정에 따라 비용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 제4조의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 실시, 제5조의 시범적용 실시 및 지원, 제9조의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발생

나. 추계결과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735,000천원으로 연평균 147,000원임
- 추계의 전제
 - 인구영향평가(제4조)는 2021년 서울시 예산서의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예산(인권담당관)을 참고하여 추계
 - 시범적용(제5조)은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의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추진계획'의 2022년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예산안을 참고하여 추계
 - 인구영향평가 교육(제9조)은 2021년 서울시 예산서의 성주류 정책수립 기반 조성 예산(여성가족정책실)을 참고하여 추계
 - 추계기간 : 5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735,000천원(연평균 147,000천원)
 - 총 비용 = 인구영향평가+시범적용+교육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인구영향평가 실시(제4조)		67,000	67,000	67,000	67,000	67,000	335,000
	시범적용(제5조)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인구영향평가 교육(제9조)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소계(b)		147,000	147,000	147,000	147,000	147,000	735,000
□ 총 비용(b-a)			147,000	147,000	147,000	147,000	147,000	735,000

○ 인구영향평가 실시 비용 ≒ 335,000천원

- 5년간 인구영향평가 실시 비용 산식 = $\sum_{i=1}^5 (\text{연간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

- 연간 인구영향평가 실시 비용 = 67,000천원

※ 2021년 서울시 예산서(인권담당관) 참고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예산/인권영향평가 용역비 : 67,000천원

○ 시범적용 비용 ≒ 350,000천원

- 5년간 시범적용 비용 산식 = $\sum_{i=1}^5 (\text{연간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

- 연간 시범적용 비용 = 70,000천원

※ 2021년 서울시 예산서(복지정책실) 참고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의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추진계획’의 2022년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예산안 : 70,000천원

○ 인구영향평가 교육비용 ≒ 50,000천원

- 5년간 인구영향평가 교육비용 산식 = $\sum_{i=1}^5 (\text{연간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

- 연간 인구영향평가 교육비용 = 10,000천원

※ 2021년 서울시 예산서(여성가족정책실) 참고

·성주류 정책수립 기반 조성/ 성별영향평가(교육, 컨설팅 등) : 10,00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분석관(주무
관) 공도연

☎ 02-2180-7952

e-mail : ehds0@seoul.go.kr